

3)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통칭한다)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개인을 포함한다)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 중 모금 활동과 예산 편성은 기획처장이, 장학금의 관리 및 지급은 사무처장이 각각 관장하고 장학금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 (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대학원위원회

제5조 (설치와 구성) ①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 관련 필요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

제8조 (교내 장학금의 종류, 수혜자격)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격, 장학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9조 (외부 기부에 의해 조성된 장학금의 수혜자격) 외부 기부에 의해 조성된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장학재단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

제10조 (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교외 장학금은 지급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는 정규등록 학생은,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 내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12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장

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매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학생이 장학금을 이미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3.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1인 2개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교내장학금의 경우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2. 외부 기부에 의해 조성된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3.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09 제2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0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1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1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2012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3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신입생외국인장학금 I·Ⅲ, 외국인장학금 I·Ⅲ는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5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②항, 제7조②항, [별표1] 개정 <2016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6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별표1] 개정 <2016 제16차 교무위원회>)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기존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변경 전 명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11조, 제14조제2호, [별표1] 개정 <2016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6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8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9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9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20 제5차 교무위원회>)

[별표1]

장학금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장학금종류	대학원	수혜자격	수혜자(기관)	수혜내용
신입생성적 우수장학금 I	일반 특수치료 전문	입학 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으로 대학원장이 추천한 학생 - 석사/석·박사통합 : 본교학부 졸업성적 상위20% 이내, 3.6/4.5 이상인 자 - 박사 : 입학전형총점(60%), 학부성적3.6/4.5이상(20%), 대학원성적 4.1/4.5이상(20%)인 자 중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대학원위원회 에서 결정	입학 첫학기 수업료 전액
신입생성적 우수장학금 II	일반 특수치료 전문	석사/석·박사통합 : 입학전형총점(60%), 학부성적 3.6/4.5이상(40%)인 자 중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입학 첫학기 수업료 50%
신입생외국인 장학금 I	일반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정원의 외국인 신입생		· 입학전형총점 95점 이상 (단,합격자의 20% 이내)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 입학전형총점 90점 이상 → 입학금 및 수업료 70% · 입학전형총점 85점 이상 → 입학금 및 수업료 50%
신입생외국인 장학금 III	일반	정원의 외국인 신입생 중 신입생 외국인 장학금 I 수혜대상자가 아닌 자		· 입학전형총점 90점 이상 → 입학금 및 수업료 50% · 입학전형총점 85점 이상 → 입학금 및 수업료 30%
외국인장학금 I	일반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추 천을 받아 입학한 정원의 외국인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 3.5/4.5 이상인자(단, 직전학기가 휴학학기인 경우 휴학 이전 학기 성적을 반영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수업료 7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4.0 미만 → 수업료 50%
외국인장학금 III	일반	정원의 외국인 재학생 중 외국인 장학금 I 수혜대상자가 아닌 자로 직전학기 평 균 3.5/4.5 이상 인자(단, 직전학기가 휴 학학기인 경우 휴학 이전 학기 성적을 반영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수업료 5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4.0미만인 자→ 수업료 30%
조교 I	전체	교육조교C로 임용된 재학생	교육조교C	수업료 전액
조교 II	교육 휴먼서비스	학사조교 및 교육조교(A,B)로 임용된 특 수대학원 재학생	학사조교, 교육조교(A,B)	수업료 30%

장학금종류	대학원	수혜자격	수혜자(기관)	수혜내용
원우회	일반	각 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재학생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회장 : 수업료 전액 부회장 : 수업료70% 총무: 백만원
	교육		회장1명, 총무1명	회장 : 수업료50% 총무 : 수업료30%
	휴먼서비스		회장1명, 총무1명	
	특수치료전문		회장1명, 총무1명	
본교 교직원	교육	본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특수대학원 재학생	직원	수업료 30%
	휴먼서비스			
목회자	휴먼서비스 (기독교학과)	목회자(목회자 사모 포함)로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학과 재학생	목사, 전도사, 사모	수업료 30%
원생우수	일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①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 ② 성적평점이 4.0 이상인 학생	학과별 재학인원의 15%이내 인원 (3명 이하 학과는 제외)	수업료 30%
	<삭제>			
	특수치료전문			
외국어학습	일반	서울여대 미래교육단 외국어교육원에 개설되는 외국어강좌(영어, 제2외국어)를 수강하는 재학생	예산범위 내	수료자 : 5만원 성적우수 : 20만원
본교출신	일반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출신 재학생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위수여를 받은 재학생	예산범위 내	30만원
	휴먼서비스/교육			
	특수치료전문			
우수학술연구	전체	SCIE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예정)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예정)자, SCOPUS 학술지에 논문게재(예정)자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국내외 전시회/개인전에 참가한 자	예산범위 내	SCIE,A&HCI,SSCI :100만원 SCOPUS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기타국제 학술지: 50만원 기타국내학술지: 20만원 외부기획,초대,기금-개인전:100만원 개인전: 80만원 다수작출품전,외부기획,초대,기금국제단체전: 50만원 기타국내외전시회: 20만원

장학금종류	대학원	수혜자격	수혜자(기관)	수혜내용
단기문화연수 (BSA)	<삭제>			
학술발표	전체	공인된 국내·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전문논문, 초록, 포스터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단, 국외발표는 3개국 100명이상 참석)	대학원 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국내: 10만원 아시아지역: 50만원 그 외 지역: 100만원
특성화사업단	일반	특성화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원재학생		기준에 따라 다름
시민단체 상근자	전체	매년 1회 환경재단이 추천하는 본교 재학 (예정) 학생 1명	환경재단 지정	재단협약에 따름
이웃사랑 장학금	<삭제>			
학업장려 장학금	교육	채직 중인 신입생 및 재학생(직전학기 평점3.5 이상) 중 신청기간 내에 제반 서류를 제출한 자	수혜자격과 동일	수업료 30%
	휴먼서비스			
전공우수활동 장학금	<삭제>			
산학협력 장학금	전체	MOU체결 가족회사에 재직 중인 재학생 중 신청기간 내에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	수혜자격과 동일	수업료 30%
대학원생 교내 인턴 장학금	전체	기숙 관련 업무를 하는 교내 부서에서 일정시간 인턴으로 봉사하는 대학원생	수혜자격과 동일	일정액 (※매학년도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함)
긴급구호 장학금	전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전공 관련 분야 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 중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3명 이내 인원	수업료 30% 이내

※ 단, 우수학술연구장학금, 학술발표장학금은 공동발표인 경우 1/N 지급, 졸업작품전시회는 제외,
공인된 국내학회는 본교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준함.

※ 외국인장학금 수혜자는 교내 타 장학금 수혜불가(교육조교C 포함)